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2. 8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 27.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 1. 27.
- 다. 상정일자 : 제77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1. 2.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 귀 식 산업위생과장)

가.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어 200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특별시에서만 설치·운영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에서도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어 우리구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의 필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마포구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설치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기금 조성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

○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기능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위촉 등
 - 아래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로 함
 - ：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 ：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 ： 산업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 ： 동장
-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0조)

-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그리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제3장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금리, 용자조건, 용자절차 등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 제71조 등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식품위생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2호) 제42조 및 제43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 도에서만 설치· 운용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서도 설치 운용토록 규정되어 마포구식품진흥기금의 설치및관리운용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임.

동 기금의 재원은 2000년 7월 13일 이후 우리구에서 식품위생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의 60%를 서울시에서 교부받아 조성하게 되며, 2001년 1월 22일 2000년도분에 대하여 10,200천원을 교부 받은바 있음.

과년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의 마포구 용자 현황을 보면, 98년도 38건:10억, 99년도 12건:3억 500만원, 2000년도 15건:4억 3,500만원으로 이중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용자된 금액은 전체 용자금의 99.5%로 특정 용도에 편중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시 안 제4조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체 실천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에도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작년 과징금 부과금액은 얼마이며 구 순위는 몇위 인지?
- 답변요지(박귀식 사회복지과장) : 작년 과징금 부과는 2,600만원이며 구 순위는 최하위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기금 연리는 몇%인지?
- 답변요지(박귀식 사회복지과장) : 기금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연리는 6%, 3%가 있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기존 기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지?
- 답변요지(박귀식 사회복지과장) : 60%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일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제3조제2항의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답변요지(박귀식 사회복지과장) : 단체에서 출연금을 주면 받아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제4조제3항, 제4항에서 조사·연구사업 및 연구기관은 누가 하는 것인지?
- 답변요지(박귀식 사회복지과장) : 일단 원칙만 정한 것임.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제3조제2항의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에서 출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요지(박귀식 사회복지과장) :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0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어 2000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특별시에서만 설치·운영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에서도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어 우리구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의 필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 조성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1)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다.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6)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

라. 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1) 기능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

(2)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3) 위원의 위촉 등

-아래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로 함

○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 산업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 등장

(4)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함(안 제13조)

3. 근거법령

가. 식품위생법(2000.1.12 법률 제6154호) 제65조 및 제71조

나. 식품위생법시행령(2000.7.27 대통령령 제16922호)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및 제53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2000. 7. 13부터 우리구에서 부과·징수한 과징금의 60%를 서울특별시
에서 교부 받아 기금조성 예정임(보위 65400-2978(2000. 11. 7)호
관련)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0.11.15~1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0. 12. 29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산업위생과장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규정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산업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4. 동장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위생과 기금 담당주사가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

제7조(용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9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용자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용자금리, 용자조건, 용자절차 등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있어서 구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 4 장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부정·불량식품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 식품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